#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념

### ■ 자금세탁방지의 정의

- 자금세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고 자금세탁 국제 기준을 만들고 운영하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40개 권고사항 서문에서는 범죄수익의 불법 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이라 정의

####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체계

#### [업무수행 관점]

- 의심되는 거래보고 (STR) :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 원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일률적으로 보고
- 고객확인제도 (CDD)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제도, 법률 관점]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법으로서 고객 확인을 위해 실명 및 번호 수집이 법으로 보장)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 및 주요 내용

#### ■ 자금세탁의 3단계 모델

- 배치: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금융회사 등에 유입시키는 단계
- 반복: 금융회사에 유입된 불법재산의 출처와 귀속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단계
- 통합 : 반복 단계를 거쳐서 합법적 재산의 형태를 가지게 된 불법자금을 정상적 경제 활동에 통합시키는 단계

#### ■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주요 사항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제27조제1항)]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 규정(제28조)]
-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 명확화(제3조)]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

# 1. 고객확인제도(KYC) 개요

-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또는 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u>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u>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함.
  - 자금세탁방지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고객수용(On-boarding) 단계에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고객확인제도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가 향후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의 작성에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고객확인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의 적정성 여부가 자금세탁방지 성공여부의 시금석이 됨.
  - 고객확인의무는 일반적으로 계좌 신규 거래를 할 경우에 수행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계좌가 없는 일회성 방문 고객도 금융실명제의 한도 금액인 1백만원을 넘는 거래를 할 경우에도 수행. (카지노 칩 3백만 원, 가상자산 1백만 원, 외국통화 1만 달러 상당, 그 외 금융거래는 1천만 원)
  -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는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제도로, 일반적인 고객확인(CDD)에 추가하여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을 확인.

# 2. 고객확인제도(KYC) 절차 및 실무

- 고객확인을 할 때는 고객거래확인서 등 어떠한 문서나 아니면 인터넷 화면 앱 등을 통해서 해당 내용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 때, 온라인 상으로 수집된 정보는 전산상으로 보관해야 하며, 문서로서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는 금융회사 등은 해당 내용을 공공 전산스캔보관소 등 해당 회사 내에 있는 이미지 보관소에다가 5년 이상 잘 보관을 해야 함.

# 3.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1단계: 100분의 25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 2단계: 아래 내용 중 택일
    - .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 .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 . 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 단,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1.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의 정의

### ■ 의심거래보고제도

-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가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 ■ 의심거래보고 시점

- 의심거래보고 시점은 신고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판단해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서 보고책임자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내부보고를 받은 보고책임자는 내부보고 사안을 검토하고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과 달리 의심거래보고(STR)는 기준 금액이 없음.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문의한 경우 금융회사 등은 STR을 보고할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2. 의심거래보고의 구성 및 작성 방법

#### [종합의견 작성 기준]

- .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고객 유형을 분석하여 자체 STR 작성 기준을 마련
- .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되, 창구 상황, 거래자의 태도 및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기술
- ․의심스러운 정도는 검토자나 결재자가 작성자의 내용을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표시

#### [종합의견 작성 원칙]

 . 명확한 보고 이유
 . 차이점 확인

 . 창구 정황 포함
 . 자금출처 확인

 . 명확한 고객정보의 제공
 . 특이점 확인

- \* 의심거래보고 시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상대방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 \*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또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

# 1. 외국화 탈세의 개요 및 유형

####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외환거래 자금세탁 :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 \* 김치 프리미엄: 국내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경우

### ■ 외국환거래 관리기구 및 주요 업무

- 기획재정부: 외환정책 수립 및 운영,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외환거래의 비상정지 명령 등
- 금웅위원회,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 감독,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업·개인 등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지사설치 등에 대한 신고 및 사후관리

- 한국은행: 외환시장 운영, 외환거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 외환중개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외환거래정보의 집중 및 관리 등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 외환거래 신고접수 및 확인, 외환거래 사후관리 등
- 국세청 : 외환거래관련 조세부문 확인·모니터링 등
- 관세청 : 급수단의 휴대반출입 신고,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환치기, 수출입거래, 수출입거래 관련 자본거래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
- 금융정보분석원 : 외환거래관련 혐의거래 정보분석 등

# 2.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

#### ■ 탈세 유형론 4가지 분류

- 절세(Tax Saving): 조세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
- 조세회피(Tax Avoidance):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형식에 의한 것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

- 탈세(Tax Evasion) : 조세의 부과·징수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조세포탈(Tax Fraud)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면탈하는 행위,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하는 행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1.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정의 및 개요

### ■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정의

-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이 원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제도.
-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의심되는 거래보고제도(STR)를 보완하기 위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금거래를 통한 불법 금융거래 차단 효과를 제고.

#### ■ 고액현금거래보고 산정금액 기준

- 고액현금거래보고 산정금액은 현금기준이므로 세후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대출이자, 보증료 등을 포함.
-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금 처리'만 보고대상으로,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 (고객의 요청으로 대체를 현금으로 처리한 거래는 해당하지 않음.)

# 2. 고액현금거래보고 주요 사례

#### ■ 주요 사례

- 국내 주요 은행 중 한 곳에서 고액현금거래 4만 여 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
- 금융회사가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3번째 경고 시에는 강도가 높아져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기관경고의 기록은 은행장이나 지주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해 그 파장이 큼.

#### ■ 4대 중점 관리 사항

- . CTR 보고기한 30일 준수
- . 고객 요청 현금 보고 필터링
- . 보고 제외 기관 필터링
- . CTR 보고 항목의 충실성

<sup>※</sup>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는 평소에 전산으로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일반 영업점이나 부서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세대 전산 적용이나 새로운 전산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적용되는 전후에는 반드시 CTR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CTR 오류는 한 번 발생하면 그 건수가 많아 관련 과태료가 고액이 될 큰 위험이 있기 때문.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1. FATF 개요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의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1989년에 설립되어 미·중·일 등 38개 정회원, IMF·WB·UN 등 2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
- 40개 권고 사항을 지정을 해 각국의 이익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로서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80여 개국에서 국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FATF 및 관련 지역기구에서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음.
- \*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이란과 북한이 있으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APG(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2. FATF 국제기준

### ■FATF 주요 규정

. 위험 평가와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

. 국가적 협력과 조정

. 자금세탁 범죄

. 몰수와 잠정조치

. 테러자금조달 범죄

.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

.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

. 전신송금

. 내부통제, 해외지점과 자회사

.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고객확인제도

. 법인의 투명성과 실제 소유자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과 감독

.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에 대한 규정과 감독

.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책임

.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 비영리 조직

. 금융기관의 비밀유지 법률

.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관

. 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

. 환거래은행

. 새로운 기법

. 제3자 의존

. 고위험 국가

.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기타 수단

.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제소유자

. 검사자의 권한

. 금융정보분석워

.법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권한

.현금휴대반출입 관리

. 통계

. 지침과 피드백

. 제재

. 국제협약의 이행

. 국제사법공조

. 국제사법공조 : 동결과 몰수

. 범죄인 송환

. 기타 국제 협력

# 3. FATF 상호평가

#### ■ 상호평가의 의의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 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사법시스템의 투명성의 척도가 됨

#### ■ 평가 부문

. 예방조치 . 테러자금조달금지 . 사법제도 . 국제협력 . 투명성 장치

# 1. 테러자금조달방지 법제

### ■ 테러자금조달방지

-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그 다음에 그 외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
- 자금세탁방지인 경우, 자금 원천거래의 목적이 모두 다 불법이지만 테러자금금지법의 경우 결과론적으로 테러의 자금으로 활용되었다면 모두 다 불법.
  - (자금원천과는 상관없이 그 자금이 테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해 처벌)

# 2. 국내법상 은행 수행사항

####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 테러 관련 자금세탁 위험 판단 시 STR 이행 강화
- 테러 관련 행위 등으로 STR 범위 확대
- 테러 관련 추출 경보에 유의

### ■ 고객확인의무

-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에 유의
-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한 철저한 확인 및 심층 분석
- 요주의 인물 리스트 등에 대한 상시 업데이트
-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 시 고위경영진의 승인

# 3. 통제 절차 및 사례

### ■ 주요 테러자금 의심유형 및 의미 해석

주체	의심 유형	의미 해석			
01701	테러인접국 비자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편도 항공권 구매	FTF가 테러위험국가 입국 및 이동 수단 확보			
외국인 테러 전투원 (FTF)	선불카드·SIM 카드 및 위성전화 등 고가의 통신장비 구매	통신환경이 열악한 테러위험국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			
	연고가 없는 터키 등 테러위험국 인접국가 송금	FTF 가담을 위해 터키 등지에 있는 중간책에게 송금 의심			
	정기적으로 테러위험국가 여행하거나 장기적 체류하는 경우	해외여행을 핑계로 출국, FTF 가담 우려			

### ■ 우리나라와 테러자금조달방지

- 체이널리시스의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기준 과거 5년간 49차례의 해킹 등을 통해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우리나라는 테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테러 청정국가는 아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리스트가 암약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제와 방지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1. 위험기반접근법(RBA)의 도입 배경과 발전

### ■ 위험기반접근법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부문별로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위험평가체계.
- 금융회사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AML/CFT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위험에 기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RBA: Risk Based Approach, 시행령上 금융회사의 VASP 평가 기준)에 대한 업무지침을 운영하여야 함.

### 2. 특정금융정보법에 적용된 RBA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안 제 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할 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 이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라 한다)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이 작성한 확인서(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2조의8 제2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신고의 수리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위험 평가 절차



# 1. 가상자산(암호화폐)란?

### ■ 가상자산(암호화폐)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 또는 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함.

#### ■ 가상자산 제외 항목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 라. 전자등록주식
- 마. 전자어음
- 바. 전자선하증권
-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VASPs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
가상자산 거래업자	0	0	0	0			0	0	0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0	0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0	0	0				

### 2. 현재의 가상자산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 신고수리 불가)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제2절 :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 사항 등

- 제3절 :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

- 제4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

- 제5절 : 거래의 거절 등 - 제6절 : 제재 관련 사항

가상자산사업자(VASP)

# 3. 국회 또는 협회차원의 대응방안

####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문제점

- 대리지불계좌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종의 차명계좌로 오해 받을 수 있음
- FATF나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음.
- 가상계죄를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고위험으로 평가함
- 중첩계좌로 오해 받을 수 있음
- 가상실명계좌 발행기관이 제한적임 (은행법에 따른 은행부터 수사하는 수협, 수협까지만 현재 가능. 우체국이나 증권회사 등은 불가)
-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실명계좌를 받고, ISMS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시행.

### 4. 가상자산 사업자의 예상전략

#### ■ 신고상황에서의 행동전략

- 시간끌기 전략: 신고를 한 후 통지 기간 3개월 동안에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방법.
-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전략: 이 경우에는 실명계좌가 필요 없음.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전략(박스 치기) : 기존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가 예전에 사업했던 내용을 숨기고 새로운 법인명이라든지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명으로 박스를 친 다음에 영업을 하는 행위 등
-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전략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Travel Rule)

## 1. 트래블 룰 개요

### ■ 트래블 룰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교환 및 보관하는 일련의 절차.
- 1996년, 미국 FinCEN의 Advisory이라는 공문을 통해, 도입된 규제임을 확인 할 수 있음.
-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트레블 룰 관련해 가상자산을 추가로 하고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 (이에 따라, FATF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해야 함.)

### ■ 시행령 관련 이슈사항

- 규제적용 시기는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
  - : 시행령에 따라 1년간 실시를 유예해, 22년 3월 25일 트래블 룰이 적용
- 개인 간의 거래에 규정 미적용
  - : 개인강의 거래에는 트래블 룰이 적용되지 않음

# 2. 가상자산사업자의 트래블 룰 구현 방법

####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가상자산사업자는 다크코인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 트래블 룰 구현 방법

- 일방향 전신송금방식
- 비인가 거래소와의 전신송금 방식
- 인가된 거래소 간의 전신송금 방식
- 제3의 플랫폼을 통한 전신공금 방식

#### ■ 국내 트래블 룰 솔루션

- 1. 베리파이바스프 (VerifyVASP)
  - 업비트의 자회사인 람다256에서 제작
  - 개인정보를 온체인하지 않고, 별도 채널(Layer)로 전송
  - 빠른 송수신 속도
- 2. R3 (R3 Corda)
  - 빗썸·코인원·코빗 등의 합자회사인 코드 제작
  - 온체인하여 개인정보 전송 및 처리

# 1. AML/CFT 감독 및 검사 체계

### ■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 제6조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 에게 감독을 위탁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직접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 2. 금융감독원의 AML 검사업무 추진 현황

### ■ 검수 수탁기관

수탁기관	위탁대상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 자조합						
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금융감독원	<ul> <li>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li> <li>「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li> <li>「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li> <li>「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li> <li>「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li> <li>「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li> <li>「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li> <li>「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li> <li>「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li> <li>「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li> <li>「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li> </ul>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허가 받은 카지노사업자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권한이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에 위탁 가능
- 정보는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요구
- 금감원 직원이라해도 자금세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 검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금감원 내에서도 AML 전담검사자로 임명된 사람만 자료에 접근 가능)

### 3. 중점 검사사항 및 지적사례

#### ■ 요주의 인물 리스트 관리 및 거래승인절차의 적정성

- 금융회사는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고객 등 요주의 인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요주의 인물 : 금융위 고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발표 테러리스트, FATF 발표 비협조국가 및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KoFIU업무규정') 제43조

### ■ 고객확인업무 이행의 적정성

- 금융회사는 계좌 신규 개설 및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정보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함.
-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을 추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함.
-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제3자는 금융회사가 요구시 고객확인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함.
- -「KoFIU업무규정」제22조~23조 등

### 1. 자금세탁방지활동과 ESG의 관계

※ ESG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은 AML업무를 통해 인지한 환경 범죄와 불법 야생동물 거래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보고(STR)를 수행함으로 처벌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음.

### ■ 가상사업자와의 관계

-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ESG 활동이 필요
  - . E: 함께하는 기후변화 행동
  - . S: 상생하는 디지털 금융기술
  - . G: 책임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 코인 채굴 시, 많은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채굴 방법을 고민해야 함.

### ■ AML의 환경적(Environment) 범주

- 불법 야생동물 거래(IWT)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범죄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다국적 조직 범죄임
- IWT는 부패를 부채질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며, 공중 보건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환경 범죄는 임업과 광물의 불법 채취와 거래에서부터 불법 토지 정리 및 폐기물 밀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함
-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핵위자들은 대규모 조직 범죄 집단에서부터 다국적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 ■ AML의 사회적(Social) 범주

- 소외되고 취약한 소수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AML 체제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정 금융 범죄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AML 활동을 말함
-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들은 인신매매부터 온라인 아동 착취, 노인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ESG 내의 거버넌스 범주와는 달리 사회적 범주에서 분류할 수 있음

#### ■ AML의 내부통제(Governance) 범주

-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AML)의 활동들이 내부통제(Governance) 범주에 포함 됨